

<b>의안 번호</b>	1634	<b>【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】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5. 29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: 2020. 5. 2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: 2020. 6. 9.(화)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에 따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출결정액: 140,166천원(일반회계)
  - 1) 지출액: 140,166천원
  - 2) 집행잔액: 0원
- 나. 지출내역: 3건

(단위: 천원)

부서	세부사업	지출액	적요
합계		140,166	
안전총괄과	재해응급복구	25,707	태풍 ‘타파’ 및 ‘미탁’ 농가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
건설과	도로관련 소송업무수행	20,423	민사소송 [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194 손해배상금]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
	가로등·보안등 유지보수	94,036	관내 가로등·보안등 전기요금 예산부족분 납부

### 4. 근거법규: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
### 5. 검토의견: 없음

# 근거법규

## 지방재정법

-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-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